

# 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989,225,444	29,676,763
일반회계	944,584,036	28,337,521
특별회계	44,641,408	1,339,242
기타특별회계	44,641,408	1,339,242
의료급여기금	1,425,197	42,756
주차장	42,061,904	1,261,857
기반시설	183,321	5,500
지하수관리	958,688	28,76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2,298	36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869,60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  
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※의존재원 표시

국비→국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→균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 
특별조정교부금→특